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

의안 번호	1750
----------	------

제출연월일: 2021. 5. 28.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이 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대상(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구매촉진(안 제5조)

마. 정보 제공(안 제6조)

바. 우선구매(안 제7조)

사. 포상(안 제8조)

### 3. 근거법규: 따로 붙임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4.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19720호, 2021. 5. 17.)

라. 입법예고: 2021. 5. 3. ~ 5. 24.(21일간)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에서 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하부 행정기관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3.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관내 상공인상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매촉진)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구 전문건설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 등이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 공무원,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근 거 법 규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은 중구 공공기관 등에서 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 3. 작성자

- 소 속: 경제진흥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성 명: 김현욱
- 연락처: (052)290-3311